

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
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5조(재산의 대부 등) ①양여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하고, 대부계약의 해지 및 대부료의 납부시기·부과·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양여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유·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써 부과된 변상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10퍼센트의 변상금 연체료율을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대부료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.
- ③(변상금 연체료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)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.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조중 “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”를 “이하 “(시행규칙)”이라 한다”로 한다.

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시장은 구청장에게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안 제4조제1항중 “도시기본계획 및 자치구별 도시기본계획(이하 “구도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”를 “도시기본계획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의 제목 “(경관지구의 세분)”을 “(지구의 세분)”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

같이 신설한다.

②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개발촉진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산업활동장려를 위한 개발촉진지구(이하 “산업활동촉진지구”라 한다.) :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집중된 지역, 산업의 집적개발이 예상된 신개발 지역으로서 산업활동의 장려 및 고부가 가치화의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
 - 2.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개발촉진지구(이하 “외국인투자촉진지구”라 한다.) :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 및 기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
- 안 제9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동조제2호 및 제3호로 하며, 동조제3호(종전의 동조제4호)중 “전통건축물보존지구”를 “사적(史的)건축물보존지구”로 하고 “보존”을 “보전”으로 한다.
- 안 제10조의 제목 “(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)”를 “(도시계획시설의 관리)”로 한다.
- 안 제15조제1항중 “의한 매수불가토지에”를 “의하여 법 제40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의한 매수불가 토지에서”를 “의하여 법 제40조제7항 각호의 토지에”로 한다.
- 안 제18조의 제목중 “운용지침”을 “운용 등”으로 하고, 동조본문중 “서울특별시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작성·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지구단위계획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- 안 제19조제3호중 “규칙”을 “시행규칙”으로 하고 “시행규칙”을 “규칙”으로 한다.
- 안 제21조제2항중 “당해”를 “시”로 한다.
- 안 제24조제1항중 “당해”를 “시”로 한다.
- 안 제26조 본문 및 각호를 동조제2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①영 제51조제1항제1호 별표2 제1호 각목의 건축물
- 안 제27조 본문 및 각호를 동조제2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①영 제51조제1항제2호 별표3 제1호 각목의 건축물